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령

<목 차>

1.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태현수
	담당부서 (과)	보험과	작 성	직급	사무관
	국장	최훈	자	연락처	02-2100-2851
	과장	과장 손주형		이메일	hstae@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1.규제사무명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4항					
정보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87조 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가지는 판매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					
	7.규제내용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업무 기준을 마련(재화 및 용역과 분리한 보험판매, 단체보험 형식의 경우 핵심사항 안내 의무화 등)					
규제의	8. 피 규제 집 단						
필요성	및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 모집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 , — — — — — — — — — — — — — — — —					
	9.규제목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 혁신적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관련된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부당한 차별, 보험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소비자는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규제의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12.일 몰설 정	해당없음					
	여 부						
기타	13. 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해당없음					
	규제 방식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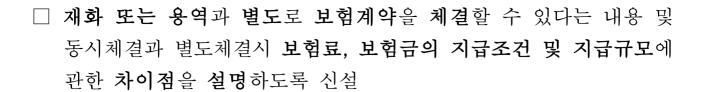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간
		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영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3호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간
		단손해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적용한
		<u>다.</u>
		1.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
		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
		해여서는 아니 되며, 간단보험대
		리점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
		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될 수
		<u>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u>
		2. 단체보험계약(보험계약자에게 피
		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
		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
		자가 피보험자가 되기 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
		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할 것
		가.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
		10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나.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u> 관한 사항</u>
	다.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
	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u>고시하는 사항</u>
	3.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
	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
	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
	만 보험을 모집하거나 피보험자단
	체를 구성하는 행위를 할 것
	4. 재화·용역과 보험계약을 동시에
	구매 또는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
	계약만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지
	급규모 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이 가지는 판매 특성* 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기 미흡 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
* 재화/서비스의 구매절차와 관련 보험의 가입절차가 밀접하게 연계
○ 특히, 유럽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먼저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장치 등을 강화할 필요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 또는 금융당국의 직접 규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 >
□ 간단보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특성 등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 존재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의 구매절차와 관련 보험의 가입절차가 밀접하게 연계된 간단손해보험의 특성상 판매자가 보험을 필수적 연계 사항으로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
<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별도 판매하고 단체 보험으로 판매시에도 핵심사항을 피보험자에게 자율적으로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별도 판매 가능 여부 등을 설명할 유인이 없고, 별도의 판매기준 및 설명의무 등을 규정화 해야 할 필요
- 특히, 단체보험은 피보험자(단체 구성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핵심사항 안내를 명확히 규정화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큼
-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대면영업을 허용할 경우, 설계사(약 41만명) 등 기존 판매채널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일정부분 영업방식을 제한할 필요
 - 특히, 불완전 판매비율이 낮은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회사 등의 핀테크(Fin-Tech) 역량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도 일정한 규제는 필요한 측면
- □ 부당한 계약자 차별, 보험료 과다 징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을 차별하는 **불공정 영업**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
- < 규제대안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및 설명의무 강화 >
-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 및 취소(해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시에도, 보험사 또는 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폰 문자, 서면, SNS, 온라인 클릭 등을 통해 보험가입 전에 안내하도록 의무 부과
 - * 단체보험은 사전에 피보험자(단체 구성원)로부터 보험 일괄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의무이행에 대한 확인의무 미적용
 - * 핵심 안내사항: 보험료, 보상하는(보상하지 않는) 사고, 보험기간, 면책범위 등



< 선택근거 >

- □ 기존 보험업법령에서는 재화·용역과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간단 보험대리점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부재
 - 특히, 금번 **규제완화**를 통해 **간단보험대리점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17.상반기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이견없음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완료	

3. 규제목표

-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 혁신적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관련된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 □ 부당한 차별, 보험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소비자는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
 - 또한, 단체보험 형식의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가 제공되어 피보험자가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고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별도 업무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국제기준	일몰설정	원칙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정합성	여부	예외금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 우리보다 **간단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피해 등을 경험한 바 있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영업기준 마련** 필요
 - 간단보험대리점이 빠르게 성장한 영국 등 유럽에서 **재화와 보험** 을 동시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험료 과다 징수**, **보험** 금 지급조건 부당 축소 등 일부 소비자 피해 발생
 - 이에 따라, EU는 간단보험대리점 활성화 자체의 장점을 살리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
 - * EU의 보험판매업무규정(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
 - **1** 재화와 보험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❷ ●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함
 - ❸ 재화와 보험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매하는 것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보험료, 보험금 지급, 보장범위 등이 상이할 경우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함
- o 타법사례
- □ 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부수적인 의무의 부과에 불과하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영업기준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영업기준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17.상반기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완료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

3. 종합결론

□ 해외사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고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할 필요

- □ 새롭게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 금융업자에 대해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을 통한 보험판매로 영 업방식 제한 필요
- □ 부당한 계약자 차별, 보험료 과다 징수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 (년	상기간 호인율(%		<u>,</u>)	단위	
10	2018		1	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영향집단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u></u>			연간권	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